

定 款

설악이앤씨 주식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설악이앤씨 주식회사(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기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업
2. 전기통신 공사업
3. 통신기기 및 기타 도매, 소매업
4. 정보통신사업 컨설팅 및 조사 용역업
5. 토목공사업
6. 제조업
7. 아이티 및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8. 소방 및 전기공사의 수급 및 시공업
9.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10.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1. 본 회사의 본점은 강원도 원주시내에 둔다.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단,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4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 방법은 강원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도민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발행과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정한다.

④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신주의 인수방법
5.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제④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가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주식의 상황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는 해당 영업 년도의 결산기에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 실현이익
4.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11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12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① 회사가 제10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주식취득의 조건은 이사회 결의 시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본 회사의 주식은 제외. 이하 “금전 등”이라 함)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양도신청기간”이라 함)
6.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②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주가 제3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항 제2호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항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로 정하며 끝수는 버린다.

제13조 (자기주식 취득의 처분)

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정하여 처분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상법 제 383조 6항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②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회사 임직원에게 상여목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이 되며, 제1항에 따라 처분한다.

제14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5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해당 사업연도 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내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7조 (주식의 양도)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본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결의를 얻어야 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를 얻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제18조 (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른다.

③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주 등의 주소 등의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또한 같다.

제21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때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한다.

제2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 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 340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자.
- 3.위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 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1.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과 주식의 액면가 중 높은 금액
- 2.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21조의 2의 제①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 장 사 채

제22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4조 (소집시기)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 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는 이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25조 (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10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할 수 있다.

②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들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한 주식의 종류에 따른 의결권 수에 따른다.

제29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1. 정관변경
- 2. 수권자본의 증가
-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방법,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 정리
- 4.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수
- 5.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 6. 자본의 감소
-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8.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34조 (이사의 원수 및 선임)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① 상법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상법 399조에 의한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39조 (대표이사의 직무 및 권리대행)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며, 이에 해당하는 이사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본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제외)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②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근속연수 ×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재임 중 사망한 이사에 대한 유족보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상당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당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4조의2 (실무임원)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임원(상법상 등기이사 또는 등기감사가 아닌 이사 또는 감사로서 등기임원 및 이사회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명 등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 6 장 감 사

제45조 (감사의 수와 선임)

- ①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상법 제409조에 따라 감사의 기능을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담당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47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8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본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제외)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 ② 퇴직한 감사의 퇴직금은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times$ 1/10 $\times$ 근속연수 $\times$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재임 중 사망한 감사에 대한 유족보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계 산

제50조 (사업 연도)

본 회사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감사는 회일 1주전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정기총회에 승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 전부터 본 회사의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4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이외의 현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①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이익배당을 포기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낮은 배당을 받는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 464조에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들 간에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5조 (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며,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⑥ 배당을 포기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낮은 배당을 받는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 464조에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들 간에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6조 (배당금지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57조 (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58조 (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 년도의 시점은 회사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서기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